

산학협력정책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기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산학협력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산학부총장, 기획정보처장, 교무처장, 대외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및 동산의료원 기획정보처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개정 2004. 9. 1., 2011. 9. 1, 2012. 8. 1, 2014. 9. 1, 2015. 3. 1.)

③ 위원장은 산학부총장으로 한다.(개정 2011. 9. 1, 2012. 8. 1, 2015. 3. 1.)

제3조(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6. 24.)

1. 협력사업의 기획, 개발, 조정과 방향설정
2. 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투자과 대응투자
3. 협력사업의 사업계획과 실적 평가
4. 협력사업 시행기관(센터 등) 지정 신청 또는 신설 계획의 타당성
5. 산업교육을 위한 특별과정과 직업교육훈련과정(계약학과) 설치
6. 협력연구소 유치
7. 학교기업 설치와 운영
8. 교원창업과 관련된 검직허가
9. 협력사업 관련 규정의 제정, 개정과 폐지
10.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협력사업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소위원회 등)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특별사업팀을 둘 수 있다.

제7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산학협력총괄실에서 담당한다.(2004. 4. 1., 2010. 6. 24., 2011. 9. 1, 2012. 8. 1.)

부 칙

1. 이 규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직위 명칭변경)